

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

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(제21조제1항 관련)

I. 일반 기준

1. 발행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2. 발행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신규사업,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·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.

II. 개별 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발행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		
		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	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	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
1.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신문등을 발행한 경우	법 제22조 제1항제1호	100	150	300
2. 발행인·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	법 제22조 제1항제2호	60	100	180
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	법 제22조 제2항제1호	80	120	230
4. 신문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	법 제22조 제2항제2호	50	80	150

5. 음란한 내용의 신문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	법 제22조 제2항 제3호	50	80	150
---	----------------	----	----	-----